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38호

2026년 8월 5일 (수)

차 례

조례 · 규칙

○ 파주시 규칙 제82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

훈령 · 예규

○ 파주시 훈령 제325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2026년 제8회 파주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이에 공포한다.

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

2026년 8월 5일

파주시 규칙 제829호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민소통·대내외 관계 보좌, 대정부 협력, 자치행정업무 발굴 및 조정 등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한다.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부서		행정지원과 ☎ 940-8604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최 희 진
	조 직 팀 장	이 은 경
	담 당 자	박 장 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직무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직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민소통·대내외 관계 보좌, 대정부 협력, 자치행정업무 발 굴 및 조정 등 시장의 정책결정 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은 「지방 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 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 원을 3명 이내로 임명한다.</u>

□ 개정이유

-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결정 보좌 업무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및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신설(제2조제2항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 변경(별표7)
 -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(6급 1명 감 / 9급 1명 증)

「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파 주 시 장 손 배 찬 인

2026년 8월 5일

파주시 훈령 제325호

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소관 부서		행정지원과 ☎ 940-8604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최 희 진
	조 직 팀 장	이 은 경
	담 당 자	박 장 호

☐ 개정이유

- 「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시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시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